|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신고 관리규정**  2003년 9월 18일 해관총서령 제103호로 공표  2014년 3월 13일 해관총서령 제218호에 의해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화물 신고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이하 <해관법>으로 약칭) 및 국가의 수출입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신고'라 함은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요구에 따라 규정된 기한내에 규정된 장소에서 전자데이터 또는 종이문서 형식의 신고서를 해관에 제출하여 수출입 화물의 실제 상황을 해관에 보고하고 해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3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또는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에서 각 유형의 수출입 화물 신고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해관 신고수속을 직접 처리하거나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법에 따라 해관에서 사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해관 신고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신고는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제출하는 전자신고 방식과 종이문서 형식의 해관신고서를 제출하는 서면신고 방식을 택할수 있으며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는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전자신고 방식이라 함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해관신고서 작성 규범>의 요구에 따라 해관신고서의 전자데이터를 해관으로 전송하고 첨부서류를 비치하는 신고방식을 의미한다.  서면신고 방식이라 함은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의 규정에 따라 서면 해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같이 해관에 직접 제출하는 신고방식을 의미한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전자신고 방식으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고 첨부서류와 같이 제출하는 서면신고서의 내용은 전자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해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먼저 서면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고 전자데이터는 사후 보충 제출할 수 있되 보충 제출한 전자데이터는 서면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해관 정보화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서면신고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의 신고업무는 해관에 등기되어 있는 통관사가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신고 요구**  **제7장**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사실대로 해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 및 규범성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수입화물의 수화인, 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보세운송화물의 수화인, 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국지 해관에서 보세운송 수속을 처리해야 하고 해당 화물이 보세운송 목적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세운송 목적지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출 화물의 송화인, 송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당 화물이 해관 감독관리구역에 도착해서 운송용구에 적재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 까지 해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방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부과한다.  **제9조** 이 규정에서 신고일이라 함은 신고 데이터가 해관에 의해 접수된 일자를 지칭한다.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의 신고방식을 불문하고 해관이 신고 데이터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 접수일로 한다.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관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된 신고 데이터 접수일자를 신고일로 하고 동 일자는 데이터 발송업체로 전송, 해관 업무현장에 공시 또는 공공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한다.  서면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관이 해관신고서를 접수 및 등기처리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제10조** 전자신고서가 해관 컴퓨터의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반송된 경우 해관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요구에 다라 전자신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신고 해야 하며 해관이 재신고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해관에 의해 접수된 전자신고서에 대한 심사원의 심사 결과 반송 및 수정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10일 이내에 전자신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신고 하되 해관이 기존 전자신고서를 접수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10일이 경과된 경우 기존 전자신고서는 무효화 처리되고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신고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해관이 신고를 다시 접수한 일자를 신고일로 한다.  **제11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자체 명의로 해관에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이 해관신고서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체 명의 또는 위탁인의 명의로 해관에 신고하는 경우 위탁인이 발행한 수권위탁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하고 수권위탁서에 기재된 수권범위내에서 해당 해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의 위탁에 의해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은 통관대행업체에게 위탁사항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다.  통관대행업체는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부담하며 심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수출입 화물의 명칭, 규격, 용도, 생산지, 무역방식 등 수출입 화물의 실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화물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 영수증, 운송서류, 컨테이너 화물명세서 등 상업서류.  (3) 수출입에 필요로 하는 허가증서 및 첨부서류.  (4) 해관에서 요구하는 가공무역수첩(종이문서 또는 전자데이터) 및 기타 수출입서류.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 화물의 송수수화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진실성,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신고 수속을 처리함에 있어 해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해관신고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화물의 명칭, 규격, 모델 번호, 유형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에 화물검사 또는 샘플 채취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해관이 이를 동의한 경우 현장에 업무인력을 파견하여 현장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화물검사 또는 샘플 채취 시 해관은 샘플채취기록과 샘플채취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샘플 채취 대상이 동물, 식물 또는 법에 따라 검역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화물인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발행하는 서면허가증명서를 득한 후에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샘플 채취 후 현장에 출두한 해관 업무인력과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샘플채취기록 및 샘플채취목록에 서명한다.  **제14조** 수출입 화물 신고가 해관에 의해 접수된 후 해관신고서류 및 그 내용에 대한 수정과 철회는 불가능하다.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입화물 해관신고서 수정 및 철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해관이 전자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의 해석, 상황설명 또는 자료 보충이 필요한 경우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의 통보를 접한 즉시 해관에 상황을 설명하거나 완비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해관이 전자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으로부터 '현장제출' 또는 '면허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물 소재지 해관을 방문하여 서명·날인한 서면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해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휴무일 또는 보세운송 등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해 규정된 기한내에 서류 제출 및 해관수속 처리를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출입화의물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사전에 서면신청을 해관에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해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받은 기한내에 처리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직접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송수화인이 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통관대행업체와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이 공동으로 신청서에 서명·날인한다.  규정된 기한 또는 허가받은 기한내에 해관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관은 전자신고서를 삭제하고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신고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 지체금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현장 제출서류 심사 시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전자신고서와 내용이 일치한 서면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개별 내용이 불일치하게 신고되었으나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관이 확인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전자신고서 내용과 일치한 첨부서류 재제출 또는 설명문 제출을 신청한 후 전자신고서 데이터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해관에 제출한 수출입 허가증서와 신고서의 내용이 불일치 하고 국가의 수출입 무역 관리·통제 정책 및 해관의 관련규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관이 확인한 경우 해관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기업은 해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해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3장 특수 신고**  **제18조** 해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선하(운송)증권 또는 적화명세서(선적화물 명세서)의 데이터를 확보한 후 해관에 사전 신고할 수 있다.  수출입 화물의 명칭, 규격, 수량 등에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사전허가를 득한 기업은 수입화물 출발 후 도착하기 전 또는 수출입 화물이 해관 감독관리 장소에 도착하기 전 3일 이내에 해관신고 수속을 사전 처리할 수 있으며 해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 화물 수출입 허가증서 및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해관의 검사를 받는다.  사전 신고를 위해 해관에 제출하는 화물 수출입 허가증서의 유효기간은 해관이 신고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시전 신고처리된 수출입 화물의 세율, 환율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이하 <관세조례>로 약칭)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특수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적화 운송용구가 입국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일괄 신고하는 기업은 해관에 유효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화물을 수입, 수출할때마다 요구에 따라 화물의 수출입 일자, 운송용구 명칭, 선하(운송)증권 번호, 세번(稅號), 품명, 규격, 가격, 원산지, 수량, 무게, 송수화인 등 해관의 감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관은 조기 검사 및 화물 인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일괄 신고 기업은 화물 인출 후 적화 운송용구 입국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관에서 일괄 신고 및 세금 납부, 통관 허가 등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이 경과될 때 까지 해관신고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화물 신고 지체금 징수방법>에 따라 신고 지체금을 부과한다.  일괄 신고는 해관에 전자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괄 신고하는 수출입 화물의 세율, 환율 적용은 <관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케이블, 수송관, 반송대 또는 기타 특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화물은 해관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지정된 해관에서 정기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 지적재산권 상황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의 요구에 따라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관은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22조** 해관이 수출입 화물의 신고가격, 관세세칙 분류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3조** 보충 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보충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중계운송 화물, 통과운송 화물, 국경통과 화물 및 특급운송 화물의 신고 규정은 해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신고서류**  **제25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가 해관 현장을 방문하여 신고서류 심사, 세금 납부, 통관검사 수속을 처리할 시 전자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한 서면신고서, 국가 수출입 관리 대상 물품의 수출입 허가증서 및 해관이 요구하는 첨부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에 제출하는 서면신고서는 사전 인쇄제작된 고정 격식의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공백 A4용지에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입화물의 서면신고서는 해관심사용, 해관보관용, 기업보관용, 해관물량정산(核銷)용, 증명용(수입화물 대금(외화) 지급용)으로 5부를 작성한다.  수출화물의 서면신고서는 해관 심사용, 해관 보관용, 기업 보관용, 해관 물량정산(核銷)용, 증명용(수출화물 대금(외화) 수취용), 증명용(수출세금환급용)으로 6부를 작성한다.  **제27조** 수출입 화물 해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계약서  (2) 영수증  (3) 컨테이너 화물명세서  (4) 적화명세서(적화운송목록)  (5) 선하(운송)증권  (6) 통관대행 수권위탁서  (7) 수출입 허가증서  (8) 해관이 요구하는 가공무역수첩(서면형식 또는 전자형식) 및 수출입 관련 서류  해관은 수출입 허가증서의 정본을 보관해야 하고 기타 서류의 경우 부본 또는 복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28조** 화물 수출입이 실제로 이뤄지기 전에 해관이 해당 화물에 대한 사전 분류를 결정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화물 수출입 신고 시 <사전 분류 결정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核銷) 증명서의 발급과 재발급**  **제29조** 가공무역에 관한 국가의 외환, 세무, 해관 등 관리 요구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송수화인과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신고 수속을 끝낸 후 해관에 다음 각 호의 해관신고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세금환급 수속 처리에 필요한 수출화물 해관신고 증명서.  (2) 외화지급 수속 처리에 필요한 수입화물 해관신고 증명서.  (3) 외화수취 수속 처리에 필요한 수출화물 해관신고 증명서.  (4) 가공무역 물량정산(核銷) 수속 처리에 필요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  해관은 신고 증명서 발행 시 증명서류의 오른쪽 아랫 부분의 지정 위치에 해당 부서에서 신고·등기(備案)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검사필 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 신청·수령 시 해관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해관에서 발급받은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가 분실,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는 분실, 훼손된 증명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관에 서면신청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해관은 해관신고 증명서, 해관 물량정산 증명서 위에 '재발급'이란 글자를 명기하고 규정에 따라 증명서 제작비를 수취한다.  **제6장 부칙**  **제31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구, 수출가공단지내 기업이 수출입하는 화물과 보세구, 수출가공단지를 출입하는 화물, 가공무역 후속관리 단계의 내수시장 판매, 잉여재료 결산 및 이월처리 등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주관 해관에서 신고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32조** 보세운송 방식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보세운송화물 감독관리방법>에 따라 신고수속을 처리한다.  **제33조** 수출입 화물의 송수화인, 송수화인이 위탁한 통관대행업체, 통관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이 규정은 해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5조** 이 방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  **进出口货物申报管理规定**  2003年9月18日海关总署令第103号发布  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第218号修改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进出口货物的申报行为，依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及国家进出口管理的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中的“申报”是指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依照《海关法》以及有关法律、行政法规和规章的要求，在规定的期限、地点，采用电子数据报关单和纸质报关单形式，向海关报告实际进出口货物的情况，并且接受海关审核的行为。  **第三条** 除另有规定外，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或者其委托的报关企业向海关办理各类进出口货物的申报手续，均适用本规定。  **第四条**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可以自行向海关申报，也可以委托报关企业向海关申报。  　　向海关办理申报手续的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预先在海关依法办理登记注册。  **第五条** 申报采用电子数据报关单申报形式和纸质报关单申报形式。电子数据报关单和纸质报关单均具有法律效力。  　　电子数据报关单申报形式是指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 受委托的报关企业通过计算机系统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报关单填制规范》的要求向海关传送报关单电子数据并且备齐随附单证的申报方式。  　　纸质报关单申报形式是指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按照海关的规定填制纸质报关单，备齐随附单证，向海关当面递交的申报方式。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以电子数据报关单形式向海关申报，与随附单证一并递交的纸质报关单的内容应当与电子数据报关单一致；特殊情况下经海关同意，允许先采用纸质报关单形式申报，电子数据事后补报，补报的电子数据应当与纸质报关单内容一致。在向未使用海关信息化管理系统作业的海关申报时可以采用纸质报关单申报形式。  **第六条** 为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办理申报手续的人员，应当是在海关备案的报关人员  **第二章 申报要求**  **第七条**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依法如实向海关申报，对申报内容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和规范性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八条** 进口货物的收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自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十四日内向海关申报。  　　进口转关运输货物的收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自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十四日内，向进境地海关办理转关运输手续，有关货物应当自运抵指运地之日起十四日内向指运地海关申报。  　　出口货物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在货物运抵海关监管区后、装货的二十四小时以前向海关申报。  　　超过规定时限未向海关申报的，海关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征收进口货物滞报金办法》征收滞报金。  **第九条** 本规定中的申报日期是指申报数据被海关接受的日期。不论以电子数据报关单方式申报或者以纸质报关单方式申报，海关以接受申报数据的日期为接受申报的日期。  　　以电子数据报关单方式申报的，申报日期为海关计算机系统接受申报数据时记录的日期，该日期将反馈给原数据发送单位，或者公布于海关业务现场，或者通过公共信息系统发布。  　　以纸质报关单方式申报的，申报日期为海关接受纸质报关单并且对报关单进行登记处理的日期。  **第十条** 电子数据报关单经过海关计算机检查被退回的，视为海关不接受申报，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按照要求修改后重新申报，申报日期为海关接受重新申报的日期。  　　海关已接受申报的报关单电子数据，人工审核确认需要退回修改的，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在10日内完成修改并且重新发送报关单电子数据，申报日期仍为海关接受原报关单电子数据的日期；超过10日的，原报关单无效，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另行向海关申报，申报日期为海关再次接受申报的日期。  **第十一条**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以自己的名义，向海关申报的，报关单应当由进出口货物收发货人签名盖章，并且随附有关单证。  　　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委托，以自己的名义或者以委托人的名义向海关申报的，应当向海关提交由委托人签署的授权委托书，并且按照委托书的授权范围办理有关海关手续。  **第十二条** 报关企业接受进出口货物收发货人委托办理报关手续的，应当与进出口货物收发货人签订有明确委托事项的委托协议，进出口货物收发货人应当向报关企业提供委托报关事项的真实情况。  　　报关企业接受进出口收发货人的委托，办理报关手续时，应当对委托人所提供情况的真实性、完整性进行合理审查，审查内容包括：  　　（一）证明进出口货物的实际情况的资料，包括进出口货物的品名、规格、用途、产地、贸易方式等；  　　（二）有关进出口货物的合同、发票、运输单据、装箱单等商业单据；  　　（三）进出口所需的许可证件及随附单证；  　　（四）海关要求的加工贸易手册（纸质或者电子数据的）及其他进出口单证。  　　报关企业未对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提供情况的真实性、完整性履行合理审查义务或者违反海关规定申报的，应当承担相应的法律责任。  **第十三条** 进口货物的收货人，向海关申报前，因确定货物的品名、规格、型号、归类等原因，可以向海关提出查看货物或者提取货样的书面申请。海关审核同意的，派员到场实际监管。  　　查看货物或者提取货样时，海关开具取样记录和取样清单；提取货样的货物涉及动植物及产品以及其他须依法提供检疫证明的，应当按照国家的有关法律规定，在取得主管部门签发的书面批准证明后提取。提取货样后，到场监管的海关关员与进口货物的收货人在取样记录和取样清单上签字确认。  **第十四条** 海关接受进出口货物的申报后，报关单证及其内容不得修改或者撤销；符合规定情形的，应当按照进出口货物报关单修改和撤销的相关规定办理。  **第十五条** 海关审核电子数据报关单时，需要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解释、说明情况或者补充材料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在接到海关通知后及时进行说明或者提供完备材料。  **第十六条** 海关审结电子数据报关单后，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自接到海关“现场交单”或者“放行交单”通知之日起10日内，持打印出的纸质报关单，备齐规定的随附单证并且签名盖章，到货物所在地海关递交书面单证并且办理相关海关手续。  　　确因节假日或者转关运输等其他特殊原因需要逾期向海关递交书面单证并且办理相关海关手续的，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事先向海关提出书面申请说明原因，经海关核准后在核准的期限内办理。其中，进出口货物收发货人自行报关的，由收发货人在申请书上签章；委托报关企业报关的，由报关企业和进出口货物收发货人双方共同在申请书上签章。  　　未在规定期限或者核准的期限内递交纸质报关单的，海关删除电子数据报关单，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重新申报。由此产生的滞报金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征收进口货物滞报金办法》的规定办理。  　　现场交单审核时，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向海关递交与电子数据报关单内容一致的纸质报关单及随附单证。特殊情况下，个别内容不符的，经海关审核确认无违法情形的，由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重新提供与报关单电子数据相符的随附单证或者提交有关说明的申请，电子数据报关单可以不予删除。其中，实际交验的进出口许可证件与申报内容不一致的，经海关认定无违反国家进出口贸易管制政策和海关有关规定的，可以重新向海关提交。  **第十七条** 企业可以通过计算机网络向海关进行联网实时申报。具体办法由海关总署另行制定。  **第三章 特殊申报**  **第十八条** 经海关批准，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可以在取得提（运）单或者载货清单（舱单）数据后，向海关提前申报。  　　在进出口货物的品名、规格、数量等已确定无误的情况下，经批准的企业可以在进口货物启运后、抵港前或者出口货物运入海关监管场所前3日内，提前向海关办理报关手续，并且按照海关的要求交验有关随附单证、进出口货物批准文件及其他需提供的证明文件。  　　验核提前申报的进出口货物许可证件有效期以海关接受申报之日为准。提前申报的进出口货物税率、汇率的适用，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以下简称《关税条例》）的有关规定办理。  **第十九条** 特殊情况下，经海关批准，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可以自装载货物的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1个月内向指定海关办理集中申报手续。  　　集中申报企业应当向海关提供有效担保，并且在每次货物进、出口时，按照要求向海关报告货物的进出口日期、运输工具名称、提（运）单号、税号、品名、规格型号、价格、原产地、数量、重量、收（发）货单位等海关监管所必需的信息，海关可以准许先予查验和提取货物。集中申报企业提取货物后，应当自装载货物的运输工具申报进境之日起1个月内向海关办理集中申报及征税、放行等海关手续。超过规定期限未向海关申报的，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征收进口货物滞报金办法》征收滞报金。  　　集中申报采用向海关进行电子数据报关单申报的方式。  　　集中申报的进出口货物税率、汇率的适用，按照《关税条例》的有关规定办理。  **第二十条** 经电缆、管道、输送带或者其他特殊运输方式输送进出口的货物，经海关同意，可以定期向指定海关申报。  **第二十一条** 需要向海关申报知识产权状况的进出口货物，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按照海关要求向海关如实申报有关知识产权状况，并且提供能够证明申报内容真实的证明文件和相关单证。海关按规定实施保护措施。  **第二十二条** 海关对进出口货物申报价格、税则归类进行审查时，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按海关要求提交相关单证和材料。  **第二十三条** 需要进行补充申报的，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如实填写补充申报单，并且向海关递交。  **第二十四条** 转运、通运、过境货物及快件的申报规定，由海关总署另行制定。  **第四章 申报单证**  **第二十五条**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到海关现场办理接单审核、征收税费及验放手续时，应当递交与电子数据报关单内容相一致的纸质报关单、国家实行进出口管理的许可证件以及海关要求的随附单证等。  **第二十六条** 向海关递交纸质报关单可以使用事先印制的规定格式报关单或者直接在A4型空白纸张上打印。  　　进口货物纸质报关单一式五联：海关作业联、海关留存联、企业留存联、海关核销联、证明联（进口付汇用）。  　　出口货物纸质报关单一式六联：海关作业联、海关留存联、企业留存联、海关核销联、证明联(出口收汇用)、证明联（出口退税用）。  **第二十七条** 进、出口货物报关单应当随附的单证包括：  　　（一）合同；  　　（二）发票；  　　（三）装箱清单；  　　（四）载货清单（舱单）；  　　（五）提（运）单；  　　（六）代理报关授权委托协议；  　　（七）进出口许可证件；  　　（八）海关要求的加工贸易手册（纸质或者电子数据的）及其他进出口有关单证。  　　海关应当留存进出口许可证件的正本，其余单证可以留存副本或者复印件。  **第二十八条** 货物实际进出口前，海关已对该货物做出预归类决定的，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在货物实际进出口申报时应当向海关提交《预归类决定书》。  **第五章 报关单证明联、核销联的签发和补签**  **第二十九条** 根据国家外汇、税务、海关对加工贸易等管理的要求，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办结海关手续后，可以向海关申请签发下列报关单证明联：  　　（一）用于办理出口退税的出口货物报关单证明联；  　　（二）用于办理付汇的进口货物报关单证明联；  　　（三）用于办理收汇的出口货物报关单证明联；  　　（四）用于办理加工贸易核销的海关核销联。  　　海关签发报关单证明联应当在打印出的报关单证明联的右下角规定处加盖已在有关部门备案的“验讫章 ”。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在申领报关单证明联、海关核销联时，应当提供海关要求的有效证明。  **第三十条** 海关已签发的报关单证明联、核销联因遗失、损毁等特殊情况需要补签的，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应当自原证明联签发之日起1年内向海关提出书面申请，并且随附有关证明材料，海关审核同意后，可以予以补签。海关在证明联、核销联上注明“补签”字样，并且按规定收取工本费。  **第六章 附 则**  **第三十一条** 保税区、出口加工区进出口的货物及进出保税区、出口加工区货物，加工贸易后续管理环节的内销、余料结转、深加工结转等，除另有规定外，按照本规定的规定在主管海关办理申报手续。  **第三十二条** 采用转关运输方式的进出口货物，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转关货物的监管办法》办理申报手续。  **第三十三条** 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受委托的报关企业、报关员违反本规定的，依照《海关法》及《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等有关规定处罚。  **第三十四条** 本规定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三十五条** 本规定自2003年11月1日起施行。 |